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시 보

제1805호

2020년 2월 11일 (화)

차 례

입법예고

○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-49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1

회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20-49호

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 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직제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행화(안 제8조제2항, 제3항제1~3호)

- “환경정책국장”을 “환경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- “환경정책과장”을 “생태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- “농축산과장”을 “농축산업무 담당과장“으로 한다.
- ”기술지원과장“을 ”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“으로 한다.

○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근거 마련(안 제15조)

-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(조 신설)

○ 업무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.(안 제16조)

-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(조 신설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0년 3월 1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

-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'입법예고'에 전문 게시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주소·성명·주민등록번호·연락전화번호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환경보전과 생태환경팀)

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, 명성빌딩 2층 환경보전과 (우 10932)

- 전화 : 031-940-5951 / FAX 031-940-445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